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7. 1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- 건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- 근거: 고용보험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최0웅	95.03.17	서울특별시 양천구 ***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4년 6월 4일, 6월 13일에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 (폐문부재)

- 공고기간: 2024. 7.19. ~ 2024.8.2.(15일간)
-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+센터 이지현(☎ 02-2639-238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